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 참여를 제안합니다!

수신: 인권·교육·사회단체

발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날짜: 2010년 6월 14일(월)

문의:

-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인권·교육단체들입니다. 지난 5월 6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을 결성한 뒤, 5월 10일 전국 12개 지역 민주진보 교육감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협약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 현재 참여단체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서울지부, 전교조울산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교조충남지부, 전교조충북지부, 전국장애교육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 @ (추가 확인중)

- 지난 6.2 교육감선거를 통해 6개 지역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전국화 전망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추진 선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를 특권 교육과 신민화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보수세력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강력 반발할 것이 분명합니다. 역풍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관한 튼튼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의 의식도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제정 과정은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학습 과정의 성격을 담보해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진보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도, 공약 실종 사태를 방지하고 어떤 교육감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림없이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닥에서부터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추진될 경우에도 교육진영이 준비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저희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펼치기 위한 운동본부가 각 지역 주체들의 힘으로 건설되고 힘찬 물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세요.

- 가장 먼저 서울에서부터 지역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조례제정의 선례를 일구어내고자 합니다. 7월 7일 출범과 함께 기념 토론회를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부디 서울운동본부에 함께하면서 학생인권 담론 확장과 조례제정운동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향후 주요 일정

: 7월 7일(수) 서울운동본부 발족식 & 발족 기념 토론회

[1부] 서울운동본부 발족식

- 때: 7월 7일(수) 오후 2시
- 곳: 서울시교육청 앞

[2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때: 7월 7일(수) 오후 3:30
- 곳: 프란체스코교육회관(가안)
-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의와 쟁점/ 기존 선례 검토와 바람직한 서울지역 조례추진 방향/ 청소년 참여권 보장 방안 등
- 토론자 : 학생/교사/학부모/학계/지역 등(섭외중)

-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시고 함께하실 단체들은 6월 17일(목) 낮 1시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고, 같은 시간에 예정된 회의에도 참석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회의에서는 조례 추진 방향에 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참여 여부 보내실 곳 : dlhredu@gmail.com

☞ 차기 회의 : 6월 17일(목) 1시, 인권교육센터 '들'

[회의 장소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충정로역 5번출구 나와 걸어서 3분 거리

☞ 약도 확인 <http://www.dlhre.org/intro.php?no=04>

※ 첨부자료 :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의미와 파장'에 관한 자료

<첨부 자료>

학생인권, 왜 핵심 교육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의미와 파장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광주, 경남 등지의 교육·인권단체들이 몇 해 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보수언론과 보수 교사·학부모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보수진영이 학생인권조례에 붙인 딱지들은 '반(反)교육', '교육 황폐화 우려', '좌빨 교육감의 학교장악 시도' 등이었습니다. 왜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던 것일까요? 단지 김상곤 교육감이 미워스러웠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지점, 그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 학생인권, 왜 교육혁명의 핵심인가?

-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인권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육체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다양성을 교육의 초석으로 삼아 차별에 맞서는 학교 △자유와 공기를 흡입하면서 책임감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교 △다양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학교 △학생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의 반대편에는 통제, 강압, 불평등, 차별, 획일, 특권, 배제, 권력독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보수진영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교육'은 자유로운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권력에 순종적인 신민을 양성하는 훈육일 뿐입니다. 그들은 가혹한 경쟁시스템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학교의 진실이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유와 참여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생 위에 군림하는 교육, 특권과 차별을 양산하는 교육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봐도, 권위주의와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교육이 도전받고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의 진실을 고발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시민으로, 정치의 주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합니다.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청소년들을 무대에서 쫓아내기 위해 학생을 억압하는 통제장치들과 경쟁교육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이 교육혁명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 더불어 학생인권이 보장돼야 교사 인권, 학부모 인권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훈육과 경쟁 시스템 속으로 몰아넣고 감시하는 간수(看守)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와 자녀의 관계 역시 피해해지고 폭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정권과 교육체계가 부여한 간수(看守)의 역할을 그만둘 때, 그들의 삶도 좀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강압과 통제와 차별을 거둬낼 때 진정한 교육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교사의 경우에도 구조적 약자인 학생 위에 군림함으로써 권위를 유지하려는 관행이 사라지고, 정권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교권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담기나?

1)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공식화합니다.

- 학교현장에서는 두발·복장규제, 체벌, 소수자 차별, 강제 야자와 보충, 종교 강요, 학생자치 활동 탄압 등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공식적 규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례는 학생의 자유, 복지, 안전, 교육, 참여에 대한 권리는 물론, 성적·성별·장애·빈곤·다문화 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게 될 것입니다.

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구제기구를 설치합니다.

- 막상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도, 학생인권을 후퇴시킬 조치가 취해져도 막상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봐도 묵묵부답이고 국가인권위나 사법기관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구조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일례로 '학생인권옹호관'(일종의 ombudsman 제도)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3)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법제화합니다.

- 학생인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기적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학교 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생참여 진흥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이런 조치들이 실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습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무엇을 일구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의 본격화는 조례 제정까지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 학생인권에 관한 고민을 숙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학생인권이 학생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지를 깨닫는 계기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모델을 만드는 실험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2) 학생들을 변화의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 가장 중요하게는 학생들이 변화의 경험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가치가 학생들 자신의 삶의 문제와 만나 흡입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침묵과 체념의 문화를 넘어 변화의 주역으로 나설 때, 경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교육현장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불이익과 모욕을 감수하면서 10년 넘게 학생 인권 보장 목소리를 내어왔던 활동가들에게도 패배적 분위기를 넘어 운동적 결실을 맺는 계기를 열어줄 것입니다.

3) 교육3주체의 연대를 기초로 지역활동을 강화합니다.

- 학생인권이 보장될 때 갈등으로 얼룩진 교육3주체 사이의 실질적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각 지역별 연대활동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